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1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백승아 · 박해철 · 서미화

민병덕 • 박지혜 • 김 윤

한창민 · 용혜인 · 조계원

이기헌ㆍ허 영ㆍ김성환

정혜경 • 황정아 • 민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 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 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 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 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둠(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9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교원은"을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 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①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	
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	
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	
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	1
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	
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	
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	
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	
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행 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삭 제>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 한 사립학교의 교원

3. • 4. (생략)

② (생략)

<신 설>

<u>교</u> 원, 「초·
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
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
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
- 원은
 ,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발기 인 또는 당원이 된 「초・중등 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 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 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은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 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 견을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